

農藥管理法 改正法律 公布

'80. 12. 31字 法律 第3322號

정부는 1980년 12월 31일자로 농약관리법개정법률(법률 제3322호)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농약관리법은 농약의 유통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우수농약개발시험의 전문성을 제고케 하여 효율적인 농약관리를 기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提 案 理 由

農藥使用量의 增加에 따른 危險性을 防止하고, 農藥의 流通管理體系를 整備하며, 優秀農藥開發試驗의 專門性을 提高케 하여 效率的인 農藥管理를 期하려는 것임.

主 要 骨 子

가. 農水産部長官은 農藥의 需給圓滑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農藥의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와 原劑業者에 대하여 農藥의 需給調節과 流通秩序維持를 命할 수 있도록 했다.
(第3條 第1項)

나. 農水産部長官은 農藥의 品目을 告示하며, 告示하지 아니한 品目の 農藥은 製造·輸入 또는 販賣할 수 없도록 했다. (第5條)

다. 農藥의 品目告示는 農村振興廳長이 當該農藥에 대한 試驗을 한 후 하도록 했다.
(第6條)

라. 製造業등의 許可取消와 販賣業등의 登錄取消 및 營業停止에 관한 要件을 具體化하여 不良 農藥의 製造와 販賣를 事前에 防止하도록 했다.
(第12條 및 第13條)

마. 農藥의 安全하고 適切한 使用과 取扱을 위하여 安全使用基準과 取扱制限基準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도록 했다.
(第18條)

바. 製造業者와 輸入業者는 出荷前に 自體檢査를 하고, 그 成績書를 自體檢査소장에게 제출 後 出荷하도록 하여 품질보장을 위한 책임생산제로 誘導토록 했다. (第19條)